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30(목)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9호

나. 제 출 자 : 강수정의원(대표발의), 김경완의원, 조윤형의원,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1. 12. 23.

라. 회부일자 : 2021. 12. 2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5조)

다.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16조)

라. 신규임용, 승진임용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27조)

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8조~30조)

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3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규칙안 취지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2022.1.13.시행)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규칙안 구성은 모두 3장 3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장 총칙에서는 이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제2장 시험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 전역예정자의 응시에 관한 사항과 시험위원(필기시험위원, 면접시험) 및 시험수당 등 지급기준과 시험의 특전 및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7항 신설조항으로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도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제3장 임용은 총 4절로 제1절 신규임용(안 제19조 ~ 제22조), 제2절 승진임용(안 제23조 ~ 제27조), 제3절 평정(안 제28조 ~ 제30조), 제4절은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안 제31조 ~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절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 절차와 영 제12조의 위임사항으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제2절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심사 또는 시험을 통한 승진임용 사항과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에의 승진임용명부 작성, 승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3절 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이나 그 밖의 실적가점 부여 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다. 검토 결과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본 규칙안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 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 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⑦ 시·군·구 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도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 일부개정]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8조(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